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
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제안이유

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을 개선하고,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경력경쟁채용 응시하는 경우, 서류전형일 또는 면접시험일로 상이한 퇴직후 3년 기준일을 공고일 현재로 변경(안 제16조제3항)
- 나.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(안 제35조제3항)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의 기간이”를 “공고일 현재”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.

제3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3.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6조(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) ①·② (생략) ③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. 1.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직무분야에서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(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분야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2년) 이상인 사람. 다만, 종전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부터 <u>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의 기간이 3년을 넘는</u>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. <u>가. 경무관 이상인 경찰공무원</u> <u>원을 채용하는 경우: 서류전형일</u> <u>나. 총경 이하인 경찰공무원</u> <u>을 채용하는 경우: 면접시험일</u> 2.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경찰로	제16조(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----- ----- <u>공고</u> <u>일 현재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

<u>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(임용예정계급은 순경으로 한다)</u> 3. ~ 6. (생 략) ④ 삭 제 ⑤ ~ ⑦ (생 략) 제35조(응시수수료) ①·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3. ~ 6. (현행과 같음) ⑤ ~ ⑦ (현행과 같음) 제35조(응시수수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u>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3.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
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	
연 락 처	(032) 835 - 2236